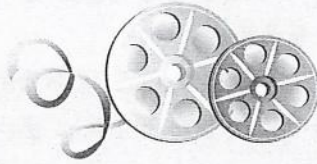


공증협회

주요소식



● 이자제한법 시행 관련 법무부 업무협조 안내

최근 법무부는 2007. 3. 29. 제정되고 2007. 6. 30.부터 시행된 이자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협조를 요청해 왔는바, 각 회원 공증사무소에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관련하여 공증서류의 효력상실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이자 30퍼센트 초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에 공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촉구된다.

□ 다 음 □

1. 공증인법 제25조에 의해 공증인은 법령에 위반한 사항과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바, 2007. 3. 29. 제정된 이자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07. 6. 30.부터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인가·허

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를 제외하고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연 이자 30퍼센트를 초과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공증인법 제25조) 및 사서증서 인증(공증인법 제59조)을 할 수 없음.

2. 다만, 위 법의 시행 이후에는 위 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약정은 최고이자율의 한도에서 유효하고, 이미 작성된 초과 약정에 대한 공정증서 및 이에 대한 집행문도 위 최고이자율의 한도에서 유효하므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약정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집행문 부여 신청이 있을 경우 위 법 시행 이전에는 원래의 약정이율에 따른 원리금, 위 법 시행 이후에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약정이율에 따른 원리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해야 할 것임.

3. 최근 공증사무소에 대한 법무부의 공증서류검열 결과, 대부분의 공증사무소에서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연 이자 30퍼센트 초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대해 공증하는 사례가 있어 지적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공증서류의 효력상실 및 분쟁발생 방지 등을 위해 주의하여 주시기 바람.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회 의견서 제출

법무부가 ①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상으로 이원화된 공증인체계를 공증인법으로 일원화 ② 공증인(법무법인 등의 공증담당변호사 포함)의 정년제(75세 제한) 도입 ③ 법무법인 등에 대해 공증인가를 요건으로 공증사무 취급 허용 및 인가 유효기간(5년)제도 도입 ④ 선서인증, 전자공증 등 선진 공증제도 도입 ⑤ 대한공증협회의 강제단체화 등을 주요 골자로 마련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2007. 11. 29. 다음과 같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 다 음 □

1. 개정안 제10조 제2항

○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임명공증인에 한하여야 함. 인가공증인의 정원까지 법무부장

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30여년의 역사를 지닌 변호사점업공증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기존 인가공증인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결과이기 때문임.

2. 개정안 제15조 제1항

○ 공증인의 임기를 5년 임기제로 하고 재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공증인의 직무적, 정치적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는 최근 대한공증협회가 한국을 대표하여 U.I.N.L(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 국제공증협회) 회원국 가입을 추진중에 있는바, U.I.N.L 회원가입 심사위원회(CCNI)으로부터 한국 공증인의 임기제는 공증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회원국 가입을 위한 조건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통상 60세가까이 되어 임명되고, 70세 정년이 되면 퇴직하므로 임기제의 문제가 없으며, 중국도 특별한 임기제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규정이 국제적인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확인하여야 할 필요 있음.

○ 또한 공증인 연임이 거부되었을 때 이에 대한 이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보완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조항을 폐지하거나 법원조직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소정의 판사 연임과 같이 규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 함.

3. 개정안 제15조 제2항

-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0세가 넘어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송무를 하지 않는 고령의 공증인들이 오히려 송무를 하는 젊은 공증인보다 훨씬 공증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공증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축적된 경험이나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직무수행의 적정성, 전문성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연령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인바, 굳이 정년을 규정해야 한다면 최소한 80세 이상으로 정년을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4. 개정안 제15조의4

- 개정안은 인가공증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무법인 설립·구성요건 등과 비교할 때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지닌 변호사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1명만 남게 될 경우 이를 보충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부당함.
- 즉, 인가공증은 법무법인 등 자체가 받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은 사실상 누구나 공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개정안 제15조의5

-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의 연령을 75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위 3.의 이유와 같음.
- 특히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법률

제7357호 변호사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종전에 인가받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특례 규정과 동 규정과의 관계에서 그 기득권을 대폭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한편, 사실상 고령의 변호사들이 많은 합동법률사무소는 연령제한을 이유로 조기에 공증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굳이 연령제한이 필요하다면 기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가입을 귀부가 정하고 있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등 구성원가입 인가기준”과 같이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개정 전 변호사법 당시의 구성원가입과 마찬가지로 제한없이 자유롭게 하도록 함으로써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6. 개정안 제15조의8

- 인가공증인의 인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위 2.의 이유 및 위 5.의 이유와 같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함.

7. 개정안 제15조의9

- 원칙적으로 취지는 타당하나, 현재 인증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변호사법시행령 규정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인가공증인 법인 전체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 중 누군가가 대리한 경우 관련 공증업무 취급 금지).

8. 개정안 제16조

○ 원칙적으로 취지는 찬성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서울의 경우 2004년도에 5대 지청이 지점으로 승격되면서 공증 사무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도 공증 업무에 혼선이 일고 있음. 예를 들면 회사 본사가 서울 중앙지점 관할인 종로구나 중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남부나 서부 지점 관할 등 다른 지역 공증인은 정관인증 사무를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만일 극소수만 존재하는 관할구역 내의 공증사무소가 모두 해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증인으로부터 정관인증을 받지 못하여 회사설립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관할구역을 벗어난 정관인증 사무를 취급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공증의뢰인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칠 수 있고, 또한 서울에서 상업등기를 할 수 있는 상업등기소는 중구에 1곳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경우는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참고로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의 경우 지방법원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는 하나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는 것으로 하고 있는 취지와 비슷하다

할 것임.

9. 개정안 제6장의2

○ 대한공증인협회의 명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한공증협회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0. 개정안 제77조의3

○ 규정 취지는 이해하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준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위 4. 의 의견과 같이 법무법인 등 자체가 인가공증인이고(특히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인가공증인 구성원 중 1인이 대표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데,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준회원으로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지 의문이다 할 것임.

11. 개정안 제77조의5 제3항 및 제77조의7 제2항, 제3항

○ 공증협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것인지 숙고하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 규정은 U.I.N.L 가입과 관련하여 U.I.N.L측은 한국의 회원국 가입조건으로 위 2. 의 이유에서 설명한 것과 더불어 대한공증협회의 유일성, 강제성 및 독립성이 보장될 것을 조건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음.

12. 개정안 제82조 제2항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대한공증협회의 장은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 제78조의 감독권 위임의 경우나 강제가입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징계개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함.

13. 개정안 제89조

- 선서인증에 대한 벌칙으로 300만원의 벌금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가볍다 할 것이므로 벌칙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4. 개정안 부칙 제1조 단서

- 연령제한과 관련하여 공포 후 3년 경과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그 일자로부터 연령제한에 해당하는 공증인은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현재의 고령자에게 3년간의 한시적 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 또한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공증인의 임기인 5년 후 정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15. 개정안 부칙 제2조

- 위 5. 의 이유와 같이 기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보완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16. 개정안 부칙 제3조

- 기존 법무법인 등에 대하여 요건을 적

용하지 않지만 장차 5년 만료시 개정된 요건을 요구한다는 것이 아닌지, 이 경우 기존 법무법인 등의 인가 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과거 영구적이던 기존의 공증인가가 제한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이는 부칙 제2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17. 개정안 제15조의 2 및 부칙 제6조

- 법무법인 등의 일반적 공증취급권을 없애고 법무부장관의 선택적 인가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이것이 정원제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그렇다면 인가의 기준이나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명성이 없다 할 것임.

18. 개정안에 추가할 사항

- 공증업무 직역 확대를 위하여 이번 개정안에 우리 협회가 지난 2006. 5. 17. 문서번호 공증협 제2005-56호로 귀부에 의견제시한 바와 같이 이혼의사확인, 인증, 등기원인증서의 인증, 특정물 인도(명도 포함) 등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권한 등의 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U.I.N.L 제25차 세계총회 참석

우리 협회는 2007. 10. 3 ~ 10. 6.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U.I.N.L 제25차 세계

총회에 Mr. Giancarlo laurini 회장의 초청을 받아 조희중 협회장, 윤정석 총무이사, 안원모 섭외이사가 공식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 협회가 2005년 10월 U.I.N.L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의 회원 가입여부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되었으나, 회원 가입심사를 담당하는 U.I.N.L 집행위원회(C.C.N.I)의 심의과정에서 ▷ 공증인의 임기와 재임명 규정(공증인법 제15조) ▷ 대한공증협회의 임의단체성(공증인법 제77조의 2)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추후 보완을 전제로 회원가입이 보류되었고, 오는 5월 중 C.C.N.I 심사위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공증제도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를 통하여 협회의 회원 가입여부에 대한 제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협회는 총회 참석 후 지난해 10월 C.C.N.I의 Mr. Jean Paul Decorps 위원장과 한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 Mr. Jeffrey A. Talpis 공증인(교수)에게 한국 공증인법의 개정 논의과정 및 C.C.N.I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설명한 공문을 송부하였다.

한편 조희중 협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Mr. Sadayuki Funabashi U.I.N.L 아시아지역 부회장 및 Mr. Hongo Takeyoshi U.I.N.L 상임위원 등을 만나 한국의 회원가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Mr. Jean Paul Decorps C.C.N.I 위원장과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의 공증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 한나라당 장운석 의원과의 간담회

우리 협회는 2007. 9. 4. 한나라당 장운석 의원의 예방을 받고, 조희중 협회장을 포함한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 현행 공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공증협회의 현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 법무부와와의 간담회

우리 협회는 2007. 12. 4.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무부와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협회측은 조희중 협회장, 윤정석 총무이사, 안원모 섭외이사가, 법무부측에서는 이진태 법무과장, 김영기 검사 등이 참석하여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무부측의 입장과 협회측의 의견을 상호 나누고, 개정안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법무부 주최 '공증인법 개정 공청회'

토론자 참여

법무부가 2007. 12. 14.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증인법 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윤정석 총무이사, 장재형 전 총무이사 등을 추천하여 개정안 중 △ 공증인 체계의 일원화 및 자격기준 강화 △ 공증협회의 강제단체화 등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 협회 임원 및 운영위원, 회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문사항을 법무부측 및 주체발표자 등에게 공개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 등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주요 질의·회신

◎ 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단서조항 관련

법무부가 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공법인 외에 비영리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지 여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공법인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우리 협회에 의견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2007. 8. 22.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공증인법 제66조의 2의 제1항 단서에서 예외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비영리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의미함.

공공성이 강하고 감독이 강화되어 있는 공법인의 경우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보다 공공성이 약하고 감독이 약한 비영리법인 전부를 인증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또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 3에서 “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이라고 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법인”이라고 하지 않는 점, 동조에 따른 별표에서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이라고 하여 “의사록

인증제외대상공법인”이라고 하지 않는 점에서 명백함.

위 별표에서 주로 공법인을 규정한 것은 다종 다양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부의 비영리법인만을 특정하여 별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개념상으로는 공법인 또한 비영리법인에 속함(세법상 공법인도 비영리법인으로 처리함).

나아가 비영리법인 또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수행상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현재 이러한 비영리법인에 의한 수익사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비영리법인의 이러한 의사결정 및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명백히 하여 책임회피를 방지할 필요성이 영리법인 못지 않게 높은 점을 고려하면 비영리법인의 의사록을 인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것임(영리법인 내지 회사의 경우 상법상 이사 등의 회사 및 주주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주주의 감시권 등 각종 규정에 따른 위법행위의 방지 기능이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실제로 상당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위법행위를 방지할만한 규정이나 대책이 미흡한 상태임).

한편 촉탁인이 정족수 이상의 의결권자의 대리인인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회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인증의 법률상 요건은 아니므로 민원인이 제기하는 불편 등의 사유는 타당하지 아니함.

◎ 공증서류 원본 열람 규정 관련

세무서로부터 보존 장부 중 '접수부'의 제출을 요구받은 공증사무소에서 법무부에 접수부 제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가 △ 공증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해 세무서에 접수부 원본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 사본의 제출은 가능한지 여부 △ 세무서 직원이 공증사무소에서 접수부를 열람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 의견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는 2007. 9. 10.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1. 세무서에 접수부 사본의 제출 가능 여부

○의견 : 불가

-공증인 작성 장부 원본의 지출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원본의 보존 목적 이외에도 촉탁인 등의 비밀보호의 목적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됨. 접수부에는 건명, 증서번호, 촉탁인 성명, 수수료 등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사항의 누설은 공증인법 제5조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보임.

2. 세무서 직원의 접수부 열람 가능 여부

○의견 : 제한적으로 불가

-세무서 직원의 접수부 열람 목적이 공증

사무소에 대한 조세행정의 집행을 위한 단순한 건수 확인 등의 목적이면 관련 법규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나, 촉탁인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임.

◎ 공정증서 및 사서증서 작성 관련

해동법무법인으로부터 공동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에 대해 그 발행인 일부만 강제집행승낙부 약속어음공증을 촉탁해 온 경우 그 발행인들 중 일부만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공정증서라는 취지로 당해 공정증서 표지에 “일부 공정증서” 등으로 “일부”라는 문구를 부가 기재하여도 무방한지와 관련하여 △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의 경우 어음법 발행인별로 그 약속어음 전액 지급책임이 있는 발행인별 독립적인 어음행위로 효력이 있고, 공증인법령 어디에도 공동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일부 발행인만 강제집행승낙부 공증을 촉탁한 경우 공증을 해 줄 수 없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공동 발행된 약속어음에 대해 그 발행인 일부만 강제집행승낙부 공증촉탁을 해도 공증인은 그 공증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강제집행승낙부 약속어음 공정증서 표지에 일부 발행인만 공증촉탁을 해서 이루어진 공증이라는 의미로 “일부”라는 문구를 부가기재하더라도 그 공증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일부 발행인만 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공정증서라는 취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공정증서 표지에 명기함으로써 촉탁하지 아니하는 발행인에 의한 강제집행승낙부 약속 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권원부여신청 등의 경우에 실수로 집행권원을 부여해 주는 등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2007. 9. 10.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질의 사안과 관련하여, 귀 회원 사무소의 의견 및 대한공증협회보 제13호 제7면에 게재된 법무부의 질의·회신 사안 중 “계약당사자 1 당사자의 촉탁 관련” 의견 회신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좀더 특정을 위하여 표지에 내용을 간결하게 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주요 회무(2007. 8. 1. ~ 12. 31.)

○ 2007. 8. 9. 제2차 집행부 회의

▶ 논의사항 : ① 가칭 “공증” 간행물 발간 논의 ② 장윤석 국회의원 협조요청 및 미팅 논의 ③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 법인 관련 법무부 의견요청 논의 ④ 공증인법 개정 진행 사항 검토 ⑤ 기타(국제공증협회 방한 관련 논의)

○ 2007. 8. 22. 법무부 질의(법인의사록 인증 제외 관련) · 회신

○ 2007. 9. 3.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 논의사항 : ① 임원 및 운영위원 선임 승인 ② 간사 선임 ③ 기타(UINL 제25차 세계총회 참석 예정 보고,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공증인법 관련 협회 예방 예정 보고, 가칭 “공증” 책자 발간 예정 보고)

○ 2007. 9. 3. 제3차 집행부 회의

▶ 논의사항 : ① UINL 제25차 세계총회 참석 논의 ② 장윤석 국회의원 예방 논의 ③ 공증업무 질의 회신 논의 ④ 기타

○ 2007. 9. 4.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의 간담회

○ 2007. 9. 10. 해동법무법인(공정증서 작성 관련) 및 법무부 질의(공증서류 원본 열람 관련) · 회신

○ 2007. 10. 3.~6. U.I.N.L 제25차 세계총회 참석/스페인 마드리드

○ 2007. 10. 16. 제4차 집행부 회의

▶ 논의사항 : ① UINL 제25차 세계총회 참석 결과 논의 ② 가칭 “공증” 발간 진행사항 논의 ③ 공증인법 개정 사항 논의 ④ 기타(공증실무 책자 추가 제작 또는 개정판 제작 논의 및 홈페이지 개편 논의)

○ 2007. 10. 23. 2008년도 공증부책 신청 안내 및 2007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 2007. 11. 13.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 논의사항 : ① UINL 제25차 세계총회 참석 결과 보고 ② 공증인법 개정 관련 보고 ③ 2008년도 정기총회 논의 ④ 기타

○ 2007. 11. 21. 제5차 집행부 회의

▶ 논의사항 : ① 공증부책 제작 업체 선정 논의 ② 공증인법 개정안 논의 ③ 가칭 “대한공증협회지” 간행 계획 논의 ④ 기타

○ 2007. 11. 29.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회신

○ 2007. 12. 3. 법무부 주최 공증인법 개정 공청회 토론자 추천

○ 2007. 12. 4. 법무부와의 공증인법 개정

안 관련 간담회

○ 2007. 12. 14. 법무부 주최 “공증인법 개정공청회” 토론자 등 참석

○ 2007. 12. 26. 제6차 집행부 회의

▶ 논의사항 : ① 가칭 “대한공증협회지” 창간 논의 ② 차기 협회장 등 임원 선임 논의 ③ 운영위원회 개최 논의 ④ 기타



회원 동정

○ 회원 가입 ○

❖ 공증인 서보석 사무소 - 소속 울산지검

- 임명일 : 2007. 9. 3.(임기 5년)
- 소재지 : 울산 남구 신정2동 1100-6
성곡빌딩 3층 (우) 680-832
- 전 화 : 052-272-9999
- 팩 스 : 052-272-9995
- 입회일 : 2007. 10. 1.

❖ 법무법인 단원

- 인가일 : 2007. 9. 11.
- 대 표 : 박정수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중앙법조빌딩 201호
(우) 425-906
- 전 화 : 031-405-2299, 487-9100
- 팩 스 : 031-487-9855
- 입회일 : 2007. 10. 1.

❖ 공증인 장광수 사무소 - 소속 수원지검

- 임명일 : 2007. 10. 1.(임기 5년)
- 소재지 : 경기 이천시 창전동 457-20
인덕빌딩 3층 (우) 467-807
- 전 화 : 031-638-0988
- 팩 스 : 031-638-0978
- 입회일 : 2007. 10. 4.

❖ 공증인 김성찬 사무소(중앙공증인합동 사무소)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07. 9. 21.(임기 5년)
- 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2층 (우) 100-864
- 전 화 : 02-756-7114~5
- 팩 스 : 02-756-7114
- 입회일 : 2007. 10. 9.

❖ 법무법인 정

- 인가일 : 2007. 10. 15.
- 대 표 : 윤형모 변호사
- 소재지 : 인천 남구 학익동 251-5
대흥평창로시스빌딩 101호
(우) 402-867
- 전 화 : 032-861-0862
- 팩 스 : 032-861-0863
- 입회일 : 2007. 10. 18.

❖ 법무법인 율가

- 인가일 : 2007. 10. 22.
- 대 표 : 김용철
- 소재지 : 경기 오산시 켄동 653-1
진성빌딩 3층 (우) 447-140
- 전 화 : 031-374-7474
- 팩 스 : 031-373-3669
- 입회일 : 2007. 10. 23.

❖ 법무법인 화산

- 인가일 : 2007. 10. 24.
- 대 표 : 윤우정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5-3화산빌딩 102호
(우) 443-821
- 전 화 : 031-216-4488

• 팩 스 : 031-216-0666

• 입회일 : 2007. 10. 24.

❖ 공증인 장희목 사무소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07. 10. 1.(임기 5년)

• 소재지 : 서울 중구 태평로2가 69-20

태평빌딩 1003호

(우) 100-864

• 전 화 : 02-753-7714

• 팩 스 : 02-774-2202

• 입회일 : 2007. 10. 25.

❖ 법무법인 선우

• 인가일 : 2007. 10. 11.

• 대 표 : 장진호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5

한승아스트라 9층

(우) 137-873

• 전 화 : 02-599-5900

• 팩 스 : 02-3487-0560

• 입회일 : 2007. 11. 1.

❖ 법무법인 올림

• 인가일 : 2007. 3. 5.

• 대 표 : 이준연, 박주일 변호사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신부동 76-1

여흥빌딩 104호, 203호, 501호

(우) 330-941

• 전 화 : 041-561-9101, 563-5115

• 팩 스 : 041-556-4265

• 입회일 : 2007. 11. 14.

❖ 법무법인 네모

• 인가일 : 2007. 11. 1.

• 대 표 : 진광엽, 박승수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74

정동빌딩 4층 (우) 100-845

• 팩 스 : 02-2272-2347

• 입회일 : 2007. 11. 19.

○ 회원 탈퇴(공증사무소 인가취소) ○

❖ 공증인 정한중 사무소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2층

• 탈퇴일 : 2007. 9. 21.

❖ 공증인가 대한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장희목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중구 태평로2가 69-20

태평빌딩 1003호

• 탈퇴일 : 2007. 9. 28.

❖ 법무법인 세영

• 대 표 : 최덕수 변호사

• 소재지 : 대구 수성구 범어동 1

대구MBC 15층

• 탈퇴일 : 2007. 11. 13.

❖ 법무법인 베스트

• 대 표 : 김상훈, 박정해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13

동우빌딩 2층

• 탈퇴일 : 2007. 12. 13.

○ 공증사무소 이전 ○

❖ 법무법인 남부제일

- 대 표 : 허형구, 변무관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57-2 신한은행 3층
- 前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21 경방필백화점 10층
- 이전일 : 2007. 11. 7.

❖ 공증인가 경기제일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박봉규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195-3번지 남부빌딩 3층
- 前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1-9 원천빌딩 305호
- 이전일 : 2007. 12. 3.

❖ 법무법인 바른세상

- 대 표 : 임홍중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1-13
성도빌딩 7층
- 前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17 철보빌딩 101호
- 이전일 : 2007. 12. 4.

❖ 법무법인 에이스

- 대 표 : 김연태, 이종찬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반포4동 59-4
송원빌딩 1, 2층
- 前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14
KTB네트워크빌딩 12층
- 이전일 : 2007. 12. 24.

대한공증협회지

<2008 창간호>

발행일 : 2008년 1월 21일

발행인 : 조 희 중

편집인 : 김 중 철

발행처 : 대한공증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18-1 (변호사회관 404호)

전화 (02)3477-5007 팩스 (02)3476-5551

<http://www.koreanotary.or.kr>

E-mail : kna@koreanotary.or.kr

제 작 : 디자인수(1566-5790)

The Journal of Korean Notaries Association

Volume. 1

2008

Published Jan 21. 2008

Publisher CHO, Hee-jong

Editor KIM, Joung-chul

Published by Korean Notaries Association

Address #404, 1718-1, Seocho3-dong, Seocho-gu,

SEOUL, KOREA

(Tel : +82-2-3477-5007 Fax : +82-2-3476-5551)